##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098

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7호 중 "그 밖에 자살예방"을 "자살예방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	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		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			
위하여 시•도지사 및 시장•군			
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			
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			
・운영할 수 있다.	,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	7. <u>자살예방</u>		
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			
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			
정하는 업무			
<u>&lt;신 설&gt;</u>	8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		
	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		
	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		
	<u>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